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기관의 장

**제2787호 2021. 4. 9.(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4897호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4898호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 전라북도 조례 제4899호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전라북도 조례 제4900호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 전라북도 조례 제4901호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10
- 전라북도 조례 제4902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전라북도 조례 제4903호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16
- 전라북도 조례 제4904호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전라북도 조례 제4905호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23
- 전라북도 조례 제4906호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7
- 전라북도 조례 제4907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30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163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4
- 전라북도 규칙 제3164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5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1호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 48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2호 2021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 50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4호 고창 선운사 영산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 51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5호 고창 석탄정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 53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6호 고창 삼호정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 55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7호 고창 전봉준 생가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 5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8호 수류성당지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 ..... 59

<b>회람</b>									
-----------	--	--	--	--	--	--	--	--	--

##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동근아트/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 .... 6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시낭송문화예술연구회) ..... 63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6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7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안) ..... 6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88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 6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691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 67
- 전라북도 공고 제2021-701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6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702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6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71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주된사업) 등록 공고 ..... 70
-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8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71
-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9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72

##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4. 5.(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82

## 시군행정

- 군산시 고시 제2021-49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 ..... 83
- 군산시 공고 제2021-7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87외1)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84
- 익산시 고시 제2021-52호 도시관리계획(부송3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86
- 익산시 고시 제2021-53호 도시관리계획(목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92
- 익산시 고시 제2021-55호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97
- 익산시 공고 제2021-101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사업 공사완료 공고 ..... 102
- 정읍시 고시 제2021-30호 도시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03
- 정읍시 고시 제2021-3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04
- 남원시 고시 제2021-4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 106
- 김제시 고시 제2021-40호 도시관리계획(구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8
- 김제시 고시 제2021-4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1
- 완주군 고시 제2021-37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3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897호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도내 고려인 주민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및 영유아보육 지원
9. 문화·예술·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념행사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 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행사
-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898호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전라북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899호

###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 $\mu\text{g}/\text{m}^3$ )	미세먼지 (PM-25) ( $\mu\text{g}/\text{m}^3$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mu\text{g}/\text{m}^3$ )	총부유 세균 (CFU/m)	일 산 화 탄 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90 이하	-	9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190 이하	-		90 이하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19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0호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미등록경로당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노인복지관
- 2. 경로당
- 3. 노인교실
- 4. 미등록경로당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 5.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 6.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간식비 지원사업
- 2. 여가·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 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운영 지원

② 도지사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사업
- 2. 여가·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 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운영 지원

③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미등록경로당의 인정요건 및 지원기준, 예산지원의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1호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도민에 대한 지원
- ② 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 및 건강관련 유관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
  -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자원 조달 및 운영
  -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의 대상 업무는 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및 시책으로 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시상 등)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2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8조 및 제12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제12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다만,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한도
2.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한도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한도
4. 대기업 본사가 동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한도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한도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가 중복되어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 포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4조의 제목“(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을“(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기업”을 “제3장 국내기업 투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원 규정을”을 “투자 지원 규정을”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

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3호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종자생산”이란 「종자산업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국가보증 대상 작물과 자체보증 대상작물의 종자를 종자생산기관에서 채종단계별로 재배하여 「종자산업법」 제28조와 제30조에서 정하는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아 종자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종자생산기관”이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신품종육성과 종자 생산·보급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 등을 말한다.
5. “종자생산업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6.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말한다.
7. “신품종육성”이란 종자의 육종·선발 등의 과정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9.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신 품종육성 및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교육
  2. 도 농작물 신품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5.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6.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과 신품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종자생산 기술보급계획의 수립)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작물별·채종단계별 종자생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자수출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3. 농가위탁 종자증식·보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품종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신품종육성 및 증식·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시·군,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라북도 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4. 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5. 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담당 부서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별도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종자관련분야 전공자
-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종자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증포장을 운영하거나 종자를 증식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2. 시·군 단위 자체종자 증식포장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종자증식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기관과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증식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3조(공무원 교육 및 직무육성 품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 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된 품종의 육성자에 대한 보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9조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4호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3항”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을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주 농촌여성”을 각각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같은 호 중 “화합의 행사”를 “화합을 위한 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주 농촌여성”을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한국문화”를 “이주 농어촌여성에 대한 한국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귀농 여성 농어업인”을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날) 도지사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5일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5호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4. 안전모, 반사기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장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

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6호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라북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 3.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 4. “경기단체”란 전라북도체육회나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 5. “체육관련단체”란 도를 대표하는 전라북도체육회 및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6.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쓴다.

- 1. 피해자 중심주의
- 2.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 3.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
- 4. 체육인 참여형의 스포츠인권 실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 5.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방식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피해신고 사항 접수
- 2.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 3.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도사업
- 4. 그 밖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신고 및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 및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인권위원회의 자문)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2.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운영
-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07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전라북도 체육진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전라북도체육회나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8.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9.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 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1. “운동경기부”란 학교나 직장 내에 선수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전라북도체육회·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및 체육·경기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체육·경기단체의 육성과 지원
-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 3. 국내외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4.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 5. 체육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
- 6. 국외 및 타 시·도 체육의 교류 지원
- 7. 국외 및 타 시·도 선수단 전지훈련의 유치 지원
- 8. 학교 및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 체육활동 지원
- 9.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지원
- 10.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지원
- 11. 레크레이션의 보급,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 지도 등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
- 12. 체육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업무 지원

제2장 전라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제5조(설치)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전라북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체육 업무 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체육회 사무처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세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63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 및 수산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
- 2의2.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람

제2조제4호 중 “미준수 등”을 “미준수, 양봉업 유지·관리 미준수, 수산물 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64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연구소”를 “연구소, 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산자서비스업”을 “금융기관 및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취득일로부터”를 “취득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6항”으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를 “제10조 및”으로, “국내복귀기업”을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내복귀기업”을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으로, “30만원)이내”를 “3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로, “그밖에 노동부령”을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그밖에 도지사”를 “그 밖에 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의5서식, 제2호의6서식, 제5호의4서식,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전용단지: 국내복귀기업 전용단지 및 익산패션단지

2.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
3.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한 해체 및 재설치, 운송비용, 각종 보험료·수수료, 해외사업장 청산·축소·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컨설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구조조정 컨설팅을 말한다) 이용금액
- ③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기업이 신청한 경우로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하여 5명 이상 상시고용한 경우로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지원 가능(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2.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명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씩),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360만원(월 30만원씩)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3.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에 12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원
- ⑤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비용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임대비용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임대비용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최대 5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설비투자금액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5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 개시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생산자서비스업(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별	비 고
생산자 서비스업 (1)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2호의5 서식, 제2호의6서식, 제5호의4서식,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IT·CT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  
(제3조제2항 관련)

업종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별	비 고
생산자 서비스업 (1)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IT·CT 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세분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세분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세분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합
	61291	통신 재판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업종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별	비 고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학과 다학제 융합 부문 제외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자연과학과 다학제 융합 부문 제외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다학제 연구부문 세분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2/3 ]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D+E)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천원	천원	건설투자비 (C)	기계장비 구입비(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당회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D+E)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천원	천원	건설투자비 (C)	기계장비 구입비(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당회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금 원			
	투자지역별	첨단업종 및 연구소	집단화 이전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산출식				
	투자지역별				
	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				
집단화 이전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저당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가동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원비용 특례사항	<input type="checkbox"/> 첨단업종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집단화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 지원받은 사항	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총액	천원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국비	천원
해외사업장 현황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투자자명	투자지분율	사업개시일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	
해외사업장 처리방안	<input type="checkbox"/> 청산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축소 <input type="checkbox"/>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업명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소재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2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11조의2에 따라 위 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3/3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등록증명서</li> <li>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li> <li>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li> <li>4. 건축물대장</li> <li>5. 착공신고필증</li> <li>6. 토지(임야)대장</li> <li>7. 사업자등록증명</li> <li>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li> <li>9. 건물등기사항증명서</li> <li>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li> </ol>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국내특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부. 2. 컨설팅 비용신청서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수행계획서 등) 각 1부. 3.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수입신고필증 5. 해외사업장 보유장비 증빙 6. 이전설비에 대한 선적서류(인보이스,캐킹리스트,B/L) 7. 물류비 제반 증빙(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8. 해체·설치비 제반 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9. 사업자등록증명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별지 제5호의4서식]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제11조의2제1항 관련)				
신청인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	
	본사소재지		E-mail	
			국내복귀기업 신청일	
	기업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투자현황	투자금액		MOU체결일	
	투자기간		투자내용	
	착공일		투자완료일	
	업종		주생산품	
	사업장소재지		공장등록일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국내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신규채용인원 (증가인원)
	명	명	명	명
기지원받은사항	기관명	지원기간	지원인원	총 지원금액
		20... ~ 20... ( )	명	원
신청현황	신청인원	명	신청금액	원
	기간	~		
<p>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 제1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전라북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 4. 기타 증명서류 일체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7호의2서식]

국내복귀기업 직원숙소 지원금 신청서(□ 건축비 □ 임대비)(제11조의2제1항 관련)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자			
투 자 현 황	MOU 체결일	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투자금액	투자규모
	'00.00.00	'00.00.00~'00.00.00	천원	부지 건축연면적 m <sup>2</sup> 신청시 명 신규고용 명 투자사업장 명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상시고용인원	
숙 소 권 속 내 역	부지매입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건축기간
	'00.00.00	'00.00.00	'00.00.00	월
	소 재 지			
	부지면적	m <sup>2</sup>	건축연면적	m <sup>2</sup> (지하 층, 지상 층)
숙소임대 내역	임대건물소재지		임대면적 임대기간	m <sup>2</sup> '00.00.00~'00.00.00( 월)
숙소운영	입주인원	명	입주개시일	
건축·임대 소요비용	총 천원	(신축시) 부지매입비 (임대시) 임대료	천원, 건축비 천원(월 천원 × 개월)	천원, 기타 천원
지원금 신청액	금 원			
	산출내역	(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저당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가등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 지원사항	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	
			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1호

###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9-205(2019.08.23.)호로 고시한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 1. 사업 명 :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 2. 위 치 : 전라북도 봉남면 평사리, 종덕리, 화봉리, 내광리 일원
- 3. 목 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 4. 수혜 면적 : 139.87ha
- 5. 사업 개요
  - 가. 수원공 : 배수장 증설 1개소, 배수문 1개소
  - 나. 평야부 : 배수로정비 3조 1,899m
  - 다. 복 토 : 4.7ha, 복토량 16,785m<sup>3</sup>
- 6. 사업 기간 : 2019년 ~ 2023년
- 7. 총 사업비 : 당초 11,344백만원 → 변경 10,618백만원
-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 9. 시행계획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 063-540-1177)
-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덧붙임 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 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공부상 면적 (㎡)	당초 편입 면적 (㎡)	변경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봉 남	내 광	1131	답	5,323	5,323	5,323	황석조	김제시 봉남면 중덕리 342	농업기반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동진지사)	임차권	
2	봉 남	내 광	1132	답	743	743	743	전라 북도					
3	봉 남	신 호	907	답	130	130	130	송옥주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597-3	농업기반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동진지사)	임차권	
4	봉 남	평 사	1051	답	151	151	151	이준명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2-1 석영주택 301호	모현농업 협동조합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815-2	근저당권 지상권	
5	봉 남	평 사	1065	답	62	62	62	이성환	김제시 봉남면 초처로 190-6	동김제농업 협동조합	김제시 봉남면 초처로 190-6	근저당권 지상권	
6	봉 남	평 사	1079	답	182	182	182	송규철	김제시 봉남면 중덕리 142				
7	봉 남	평 사	1091	답	199	199	199	방재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6길 23 401동 2203호 (부천범박힐 스테이트)				
8	봉 남	평 사	1103	답	208	208	208	김상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공 1159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121동 901호				
9	봉 남	평 사	1211 -11	답	30	30	30	김제고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318-9	동김제농업 협동조합	김제시 봉남면 초처로 190-6	근저당권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 지상권	
10	봉 남	대 송	554	답	3,336	-	3,336	조막동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568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2호

## 2021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 □ 2021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시도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지정계획면적 (천㎡)		산업용지면적 (천㎡)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전라 북도	임실군	오수제2농공단지	농공	329	169	254	111	임실군수

※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정책과 산단조성지원팀 김태일(280-445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4호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고시명 : 「고창 선운사 영산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2. 고시내용**

- 문화재 명칭 : 고창 선운사 영산전(高敞 禪雲寺 靈山殿)
- 지정종별 및 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7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 수량 : 1동
- 문화재구역 : 1필지 121.8㎡
- 소유자(관리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 지정사유 : 고창 선운사 영산전은 대웅전과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전으로서 1713년에 2층 각황전으로 창건, 1821년 단층으로 재건하는 등 연혁과 관련된 기록이 명확하다. 건축물의 형식은 19세기 초 부분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고주 7량가 양식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찰의 영산전 건물과 다른 형식의 구조, 공포,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독창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건물 내부 벽면에는 1821년 재건 당시의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 미술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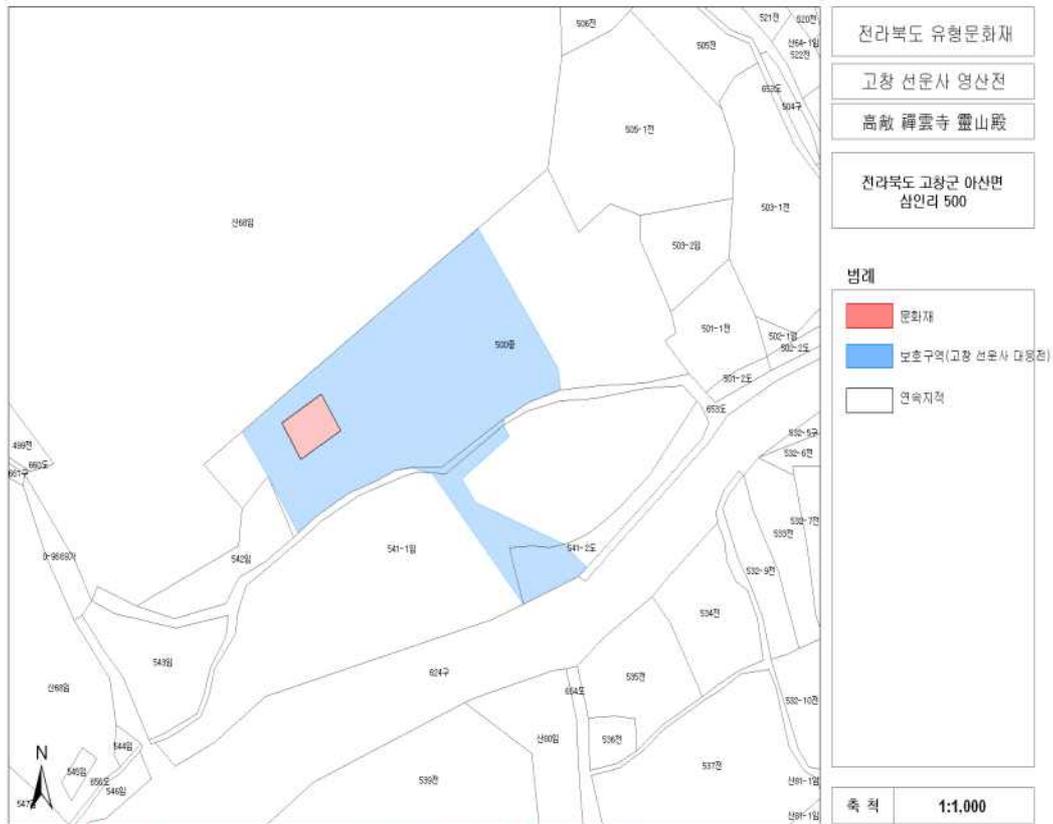
-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 주소: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49

붙임 : 문화재구역 면적조서 및 문화재구역 도면 각 1부.

붙임 1. 「고창 선운사 영산전」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문화재 구역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종교 용지	8,222	121.8	대한불교 조계종***	고창군 아산면
	계			8,222	121.8		

붙임 2. 「고창 선운사 영산전」 문화재구역 고시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5호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고시명 : 「고창 석탄정」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2. 고시내용**

- 문화재 명칭 : 고창 석탄정(高敞 石灘亭)
- 지정종별 및 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8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창천길 174-10(울계리 341)
- 수량 : 1동
- 문화재구역 : 1필지 674㎡, 문화재보호구역 4필지 1,906㎡
- 소유자(관리단체) : 고흥류씨 석탄정종중
- 지정사유 : 고창 석탄정은 1581년 석탄(石灘) 류운(柳漣)이 낙향 후 학문 강론을 위해 건립한 것을 1830년에 중건한 것이다. 정자는 5량가,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의 구조이다. 석탄정은 전라북도 누정 중에서 창건연대가 빠르고 조선 후기 문중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가구구조가 독특하여 건축학적 가치가 있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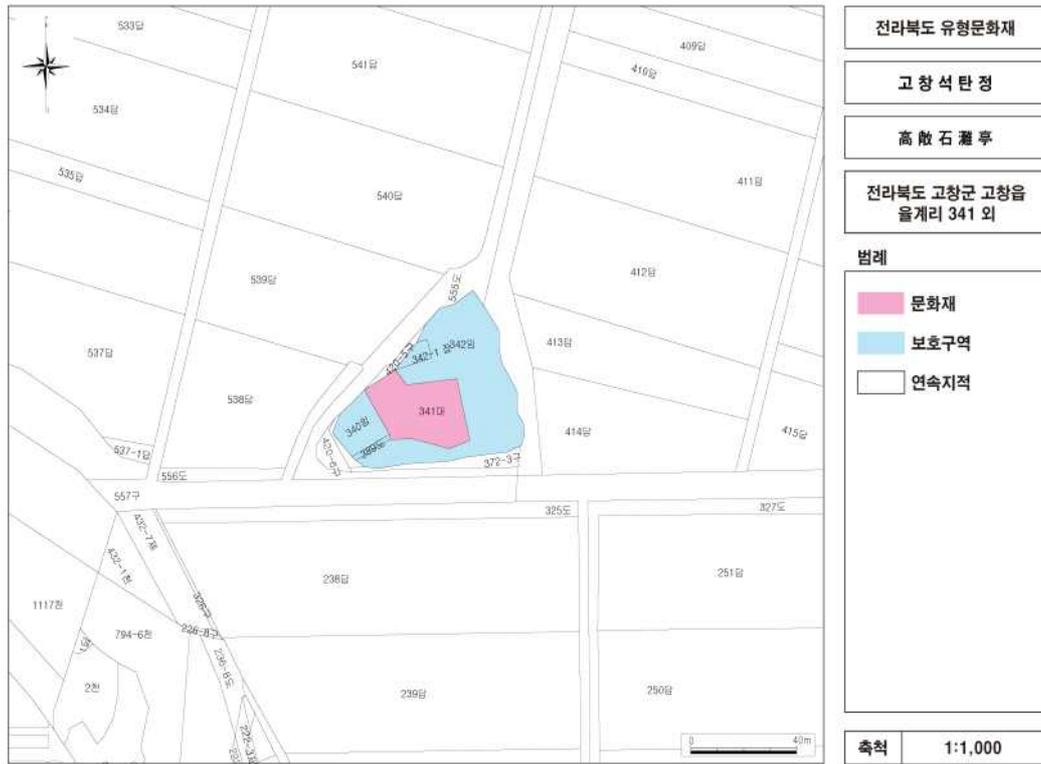
-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 주소: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49

붙임 : 문화재구역 면적조서 및 문화재구역 도면 각 1부.

붙임 1. 「고창 석탄정」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문화재 구역	고창군 고창읍 울계리	341	임	674	674	고흥류씨**	고창군 고창읍
		계		674	674		
문화재 보호구역	고창군 고창읍 울계리	340	임	263	263	고흥류씨**	고창군 고창읍
		342	임	1,542	1,542	고흥류씨**	고창군 고창읍
		342-1	임	61	61	고흥류씨**	고창군 고창읍
		389	도	40	40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계			1,906	1,906		

붙임 2. 「고창 석탄정」 문화재구역 고시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6호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고시명 : 「고창 삼호정」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2. 고시내용**

- 문화재 명칭 : 고창 삼호정(高敞 三湖亭)
- 지정종별 및 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9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302(용계리436)
- 수량 : 1동
- 문화재구역 : 1필지 536㎡
- 소유자(관리단체) : 옥천조씨 중추공파중중
- 지정사유 : 고창 삼호정은 옥천조씨 삼형제인 인호 조현동, 덕호 조후동, 석호 조석동이 1700년대에 지었고, 1864년에 중건한 정자로 5량가,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집의 구조이다. 삼호정은 주변 경관이 우수하며, 조선 후기의 건축학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시를 쓰고 글을 읽으며 지냈던 당시의 유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로써 중요하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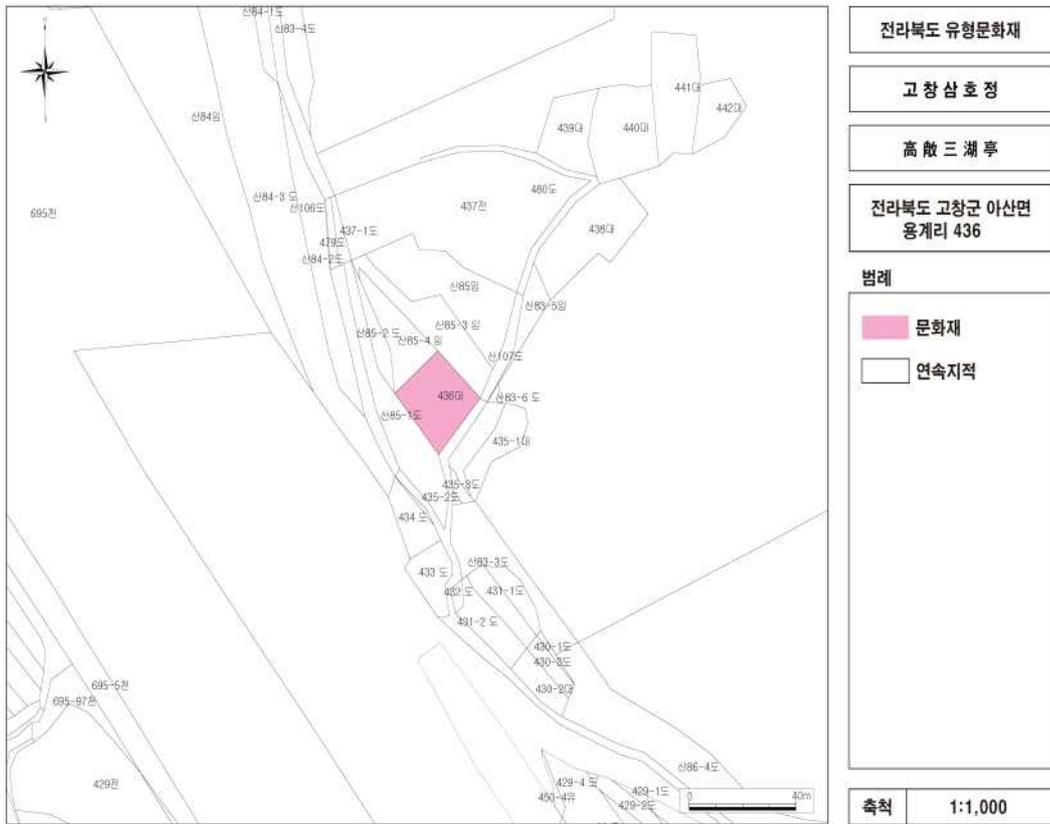
**4. 연락처**

-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 주소: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49
- 붙임 : 문화재구역 면적조서 및 문화재구역 도면 각 1부.

붙임 1. 「고창 삼호정」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문화재 구역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436	대	536	536	옥천조씨**	고창군 아산면
		계		536	536		

붙임 2. 「고창 삼호정」 문화재구역 고시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7호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기념물) 및 보호구역 지정, 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고시명 : 「고창 전봉준 생가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

- 문화재 명칭 : 고창 전봉준 생가터(高敞 全琫準 生家址)
- 지정종별 및 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146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 문화재구역 : 1필지 2,813㎡
- 소유자(관리단체) : 고창군
- 지정사유 : 전봉준 생가터는 천안전씨 족보인 『병술보』에 대한 학술 고증을 통해 전봉준(全琫準, 1855~1895) 장군이 1855년 12월 3일 죽림리 당촌 마을에서 태어나 13세까지 살았던 곳으로 확인되며, 촌로들의 증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장소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혁명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도모하고 이끈 최고 지도자가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상징적인 장소이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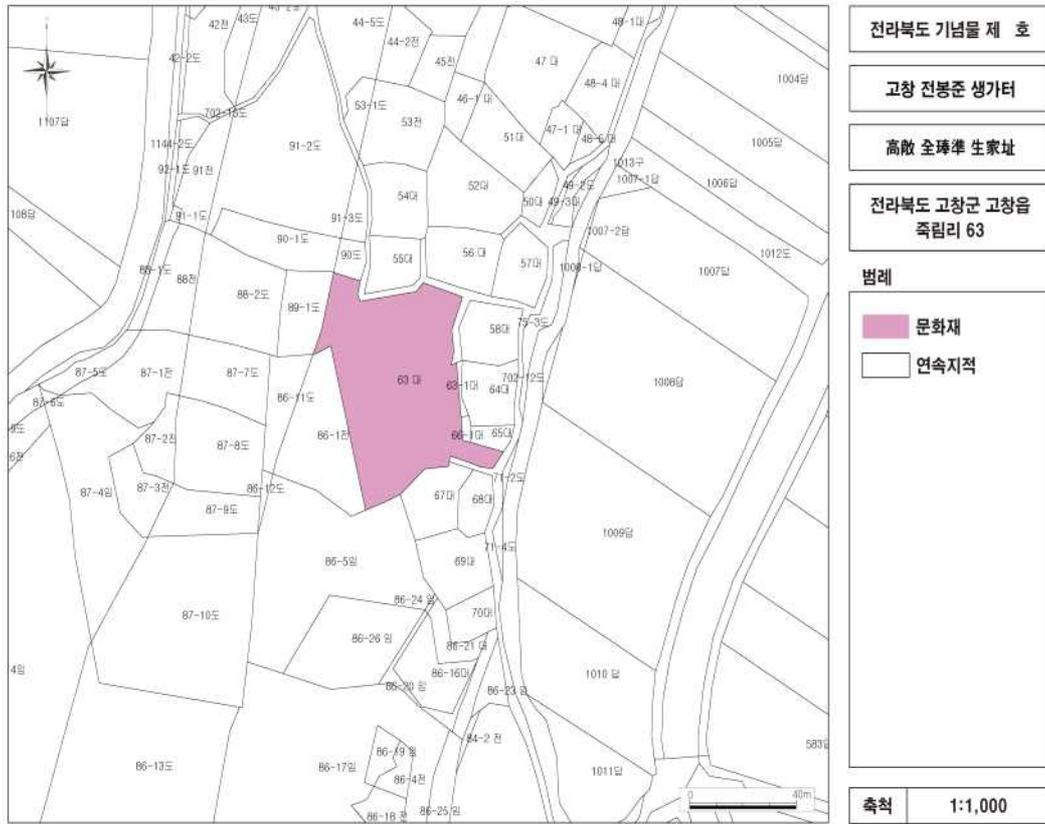
-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 주소: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49

붙임 : 문화재구역 면적조서 및 문화재구역 도면 각 1부.

붙임 1. 「고창 전봉준 생가터」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 조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문화재 구역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	대	2,813	2,813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계			2,813	2,813		

붙임 2. 「고창 전봉준 생가터」 문화재구역 고시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108호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문화재자료) 및 보호구역 지정, 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고시명 : 「수류성당지」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

**2. 고시내용**

- 문화재 명칭 : 수류성당지(水流聖堂址)
- 지정종별 및 번호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96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223번지
- 문화재구역 : 1필지 5,332㎡
- 소유자(관리단체) : 천주교 수류성당
- 지정사유 : 수류성당은 완주군 소재 되재성당, 화산성당과 함께 호남의 3대 성당 중의 하나로써 1907년 48칸의 목조건물로 신축했던 것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소실되었으며, 이 때에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다. 1959년 지역민들에 의해 지어진 수류성당이 현존하고 있다. 수류성당지는 많은 신부와 수도자를 배출한 곳이며 전주시 전동 본당과 더불어 전라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인접하여 교우촌이 형성되어 지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 주소: (우)54386 김제시 중앙로 40
  - 전화 : 063-540-3882 / 전송 : 063-540-3454

붙임 : 문화재구역 면적조서 및 문화재구역 도면 각 1부.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동근아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 1. 허가 번호 : 제2021-22호
- 2. 법인 명 : 사단법인 동근아트
- 3.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585-5
- 4. 대표자 : 이동근
- 5. 허가연월일 : 2021년 4월 2일
- 6. 설립 목적 : 돌팍 이동근 화백의 예술적 업적을 조명하고 시각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문화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 1. 허가 번호 : 제2021-2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73, 3층
4. 대 표 자 : 문성하
5. 허가연월일 : 2021년 4월 2일
6. 설 립 목 적 :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적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 문화 · 직업훈련 · 여가활동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적 소외계층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통합사회를 구  
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하나 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한국시낭송문화예술연구회)**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허가 번호 : 제2021-24호
2. 법인 명 : 사단법인 한국시낭송문화예술연구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1-6
4. 대표자 : 고순복
5. 허가연월일 : 2021년 4월 2일
6. 설립 목적 : 시낭송을 통해 문학을 보급하고 좋은 문화를 선도하는 시낭송문화를 확산시킴으로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4호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단체의 명칭 : 금화무용단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 나지현(94. 2. 27.)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2가 47-10
4. 주된 사업
  - 가. 한국무용 연구 보존사업을 위한 홍보축제 및 교육
  - 나. 사회봉사와 이웃사랑 실천과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수시시연
  - 다. 한국무용 보존과 전통국악, 가야금의 교육 강좌개설
  - 라. 기타 본회의 목적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5. 등록연월일 : 2021. 4. 2.

전라북도 공고 제2021-677호

###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업 체 명	업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측정대행항목	등록일자
케이에스환경(주)	측정대행업(대기)	김선국	제20호	군산시 동장산로 119, 2층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브롬, 폼알데하이드,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비소, 총탄화수소, 매연	'21.3.24.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688호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9.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4-1-전라북도 - 19호
2. 단체명칭 :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3.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김 선 희
  - 생 년 월 일 : 1959.02.05
  - 주 소 : 전북 김제시 성덕면 지평선로 109-1
5. 주된 사업
  - 여성단체 사업의 정보교환
  - 여성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개발사업
  - 국내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

###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문순자(1958.08.22.)	김선희(1959.02.05.)	

7. 허가(변경)일자 : 2021. 4. 2.

전라북도 공고 제 2021-691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허가번호 : 제2021-21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전주시도시농업연구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15-4, 102호
4. 대표자 : 강주석
5. 허가연월일 : 2021년 3월 23일
6. 설립목적
  - 도시농업을 통하여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도시농업을 활용한 도시환경개선, 도시공동체 운동과 사회복지, 교육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701호

##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 □ 공고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 등록말소					
2. 수신처	성명(명칭)	주식회사 다원토건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81-3, 5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후 보완자료 미제출</li> <li>-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 2020.8.3. ~ 2021.2.2</li> <li>- 보완자료 제출 : 2021.03.02까지 ⇒ <b>“미제출”</b></li> <li>※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제3의2호」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li> <li>-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li> <li>처분 종료일기준 30일 이내 <b>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b> 제출받아 확인</li> </ul> </li> </ul>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 (건축공사업 05-0653)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제1항, 법 제83조제3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장우석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전화번호	280-4455
	일 시	2021년 4월 27일 14:30부터 15:00분까지(30분)				
	장 소	전북도청 상설청문장(1층)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주제자	소속 및 직위	전라북도 청문관			
성 명		이동현				

전라북도 공고 제2021-702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 공고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 영업정지					
2. 수신처	성명(명칭)	봉황건설(주)				
	주 소	[54999]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5 5층 5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2020.12.31.) - 신용등급 하락 ※ (재)건설산업정보센터-1-15747호 통보 사항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토목건축공사업 10-2167)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제1항, 법 제83조제3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장우석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전화번호	280-4455
	일 시	2021년 4월 27일 14:00~14:30				
	장 소	전북도청 상설청문장(1층)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북도 청문관			
성 명		이 동 현				

전라북도 공고 제2021-716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주된사업)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대표자, 주된사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4월 9일

1. 단체의 명칭 : 오송제 지킴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 (당초) 이창수  
(변경) 서철교(1956. 11. 21.)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54번지
4. 주된 사업
  - 오송지 꽃길 조성 사업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 학생 사생대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등
  - 수선화 군락지 및 상사화 군락지 조성
5. 최초등록연월일 : 2008. 06. 24.
6. 구 분 : 변경(대표자, 주된 사업)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8호

##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장

2021년 4월 9일

###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전라북도의회	직위(직급)	도의원	성 명	김철수
-----	--------	--------	-----	-----	-----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AP위성	1,697	매각	35,418	'21.2.26	NH투자증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9호

##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장  
2021년 4월 9일

### □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전라북도의회	직위(직급)	도의원	성 명	국주영은
-----	--------	--------	-----	-----	------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HMM	300	매각	9,735	21.3.31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200	매각	5,065	21.3.31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10	매각	2,130	21.3.31	KB증권
배우자	신풍제지	500	매각	1,880	21.3.31	KB증권
배우자	박셀바이오	34	매각	3,983	21.3.31	KB증권
배우자	노바텍	30	매각	1,213	21.3.31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70,001	매각	51,860	21.3.31	KB증권
배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200	매각	1,224	21.3.31	KB증권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10	매각	1,352	21.3.30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299	매각	7,489	21.3.30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309	매각	66,285	21.3.30	KB증권
배우자	SK네트웍스	200	매각	1,116	21.3.30	KB증권
배우자	박셀바이오	14	매각	1,701	21.3.30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0,000	매각	6,850	21.3.30	KB증권
배우자	동진제미켄	50	매각	1,710	21.3.30	KB증권
배우자	신성이엔지	200	매각	645	21.3.29	KB증권
배우자	신풍제지	100	매각	370	21.3.29	KB증권

배우자	네오이물텍	20	매각	272	21.3.29	KB증권
배우자	세원	130	매각	860	21.3.29	KB증권
배우자	에이택티앤	50	매각	1,280	21.3.29	KB증권
배우자	자안	100	매각	37	21.3.29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0,000	매각	6,865	21.3.29	KB증권
배우자	텔레칩스	20	매각	326	21.3.29	KB증권
배우자	네오이물텍	80	매각	1,130	21.3.26	KB증권
배우자	에이택티앤	61	매각	1,518	21.3.26	KB증권
배우자	자안	2,900	매각	1,107	21.3.26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3,001	매각	9,126	21.3.26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1	매각	0.3	21.3.26	KB증권
배우자	팜스토리	1	매각	2	21.3.26	KB증권
배우자	유니셀	40	매각	542	21.3.25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0,000	매각	7,500	21.3.24	KB증권
배우자	네오이물텍	40	매각	574	21.3.23	KB증권
배우자	에이택티앤	149	매각	3,869	21.3.23	KB증권
배우자	케이사인	190	매각	458	21.3.23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4,000	매각	3,116	21.3.23	KB증권
배우자	팜스토리	500	매각	1,097	21.3.23	KB증권
배우자	한솔로지 스틱스	1,000	매각	3,622	21.3.22	KB증권
배우자	네오이물텍	50	매각	745	21.3.22	KB증권
배우자	한국맥널티	100	매각	972	21.3.22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0,000	매각	7,905	21.3.22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999	매각	378	21.3.22	KB증권
배우자	팜스토리	2,500	매각	5,573	21.3.22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2,000	매각	1,572	21.3.19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35,010	매각	13,817	21.3.19	KB증권
배우자	한빛소프트	500	매각	3,348	21.3.19	KB증권
배우자	한일사료	2,300	매각	4,889	21.3.19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9,999	매각	7,679	21.3.18	KB증권
배우자	대영포장	300	매각	736	21.3.17	KB증권
배우자	한농화성	50	매각	807	21.3.17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	매각	82	21.3.17	KB증권
배우자	디앤씨미디어	30	매각	1,044	21.3.17	KB증권
배우자	줍인터넷	300	매각	1,536	21.3.17	KB증권
배우자	테스	50	매각	1,597	21.3.17	KB증권
배우자	칩스앤미디어	70	매각	1,246	21.3.17	KB증권

배우자	SFA반도체	100	매각	820	21.3.17	KB증권
배우자	대영포장	600	매각	1,555	21.3.16	KB증권
배우자	한농화성	50	매각	810	21.3.16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80	매각	2,116	21.3.16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	매각	827	21.3.16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130	매각	30,160	21.3.16	KB증권
배우자	자안	3,000	매각	1,173	21.3.16	KB증권
배우자	미래생명자원	200	매각	1,240	21.3.16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4,997	매각	11,457	21.3.16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10,000	매각	6,500	21.3.16	KB증권
배우자	다날	200	매각	1,848	21.3.16	KB증권
배우자	LG화학	2	매각	1,878	21.3.15	KB증권
배우자	대한해운	500	매각	1,900	21.3.15	KB증권
배우자	아이진	100	매각	1,540	21.3.15	KB증권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20	매각	1,178	21.3.15	KB증권
배우자	팜스토리	10	매각	22	21.3.15	KB증권
배우자	팜스토리	490	매각	1,102	21.3.12	KB증권
배우자	대영포장	300	매각	747	21.3.11	KB증권
배우자	포스코케미칼	10	매각	1,485	21.3.11	KB증권
배우자	자안	7,000	매각	2,709	21.3.11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7,000	매각	6,092	21.3.11	KB증권
배우자	티플렉스	1,000	매각	4,325	21.3.11	KB증권
배우자	SFA반도체	100	매각	825	21.3.11	KB증권
배우자	모베이스전자	1,000	매각	3,205	21.3.11	KB증권
배우자	현대퓨처넷	260	매각	1,325	21.3.10	KB증권
배우자	한세실업	50	매각	1,062	21.3.10	KB증권
배우자	웅진씽크빅	300	매각	985	21.3.10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340	매각	9,086	21.3.10	KB증권
배우자	오션브릿지	80	매각	1,476	21.3.10	KB증권
배우자	이트론	13,500	매각	11,423	21.3.10	KB증권
배우자	펜엔터테인먼트	120	매각	950	21.3.10	KB증권
배우자	한네트	100	매각	1,120	21.3.10	KB증권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20	매각	1,160	21.3.10	KB증권
배우자	이화전기	1,000	매각	294	21.3.10	KB증권
배우자	한세실업	50	매각	1,007	21.3.9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150	매각	4,400	21.3.9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40	매각	3,264	21.3.9	KB증권

배우자	줌인터넷	100	매각	515	21.3.9	KB증권
배우자	SFA반도체	100	매각	839	21.3.9	KB증권
배우자	케이엠티블유	20	매각	1,176	21.3.9	KB증권
배우자	포스코 ICT	300	매각	2,451	21.3.9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100	매각	3,035	21.3.8	KB증권
배우자	성창기업지주	500	매각	1,190	21.3.8	KB증권
배우자	줌인터넷	100	매각	545	21.3.8	KB증권
배우자	포스코 ICT	300	매각	2,457	21.3.8	KB증권
배우자	한세실업	50	매각	1,065	21.3.5	KB증권
배우자	황금에스티	100	매각	922	21.3.5	KB증권
배우자	미래아이앤지	3,000	매각	1,623	21.3.5	KB증권
배우자	알체라	50	매각	1,890	21.3.5	KB증권
배우자	지놈앤컴퍼니	45	매각	2,794	21.3.5	KB증권
배우자	지니텍스	1,000	매각	3,410	21.3.5	KB증권
배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100	매각	1,565	21.3.5	KB증권
배우자	엠게임	100	매각	673	21.3.5	KB증권
배우자	황금에스티	200	매각	1,810	21.3.4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30	매각	948	21.3.4	KB증권
배우자	코오롱글로벌	50	매각	982	21.3.4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10,000	매각	6,600	21.3.4	KB증권
배우자	KT서브마린	200	매각	1,060	21.3.4	KB증권
배우자	피델릭스	1,000	매각	1,410	21.3.4	KB증권
배우자	엠게임	50	매각	297	21.3.2	KB증권
배우자	자비스	400	매각	936	21.3.2	KB증권
배우자	피델릭스	500	매각	682	21.3.2	KB증권
배우자	인스코비	500	매각	1,310	21.2.26	KB증권
배우자	엠투아이	100	매각	2,260	21.2.26	KB증권
배우자	지놈앤컴퍼니	5	매각	288	21.2.26	KB증권
배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50	매각	727	21.2.26	KB증권
배우자	자비스	200	매각	481	21.2.26	KB증권
배우자	줌인터넷	10	매각	61	21.2.26	KB증권
배우자	KT서브마린	150	매각	816	21.2.26	KB증권
배우자	피씨디렉트	200	매각	2,340	21.2.26	KB증권
배우자	솔루엠	100	매각	2,407	21.2.25	KB증권
배우자	진원생명과학	150	매각	2,235	21.2.25	KB증권
배우자	삼성제약	10	매각	79	21.2.25	KB증권

배우자	지놈앤컴퍼니	20	매각	1,092	21.2.25	KB증권
배우자	바이텍스	30	매각	1,012	21.2.25	KB증권
배우자	케이앳터블유	250	매각	17,360	21.2.25	KB증권
배우자	SK케미칼	10	매각	3,760	21.2.24	KB증권
배우자	삼성제약	90	매각	742	21.2.24	KB증권
배우자	포인트모바일	25	매각	1,295	21.2.24	KB증권
배우자	에스씨엠 생명과학	40	매각	1,465	21.2.24	KB증권
배우자	강스텝 바이오텍	300	매각	2,151	21.2.24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10,000	매각	6,560	21.2.24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제약	10	매각	1,618	21.2.24	KB증권
배우자	바이텍스	70	매각	2,187	21.2.24	KB증권
배우자	유라테크	100	매각	1,125	21.2.24	KB증권
배우자	클라우드에어	700	매각	1,271	21.2.24	KB증권
배우자	케이앳터블유	100	매각	7,450	21.2.24	KB증권
배우자	KTcs	1,000	매각	3,485	21.2.23	KB증권
배우자	필룩스	400	매각	1,772	21.2.23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49	매각	1,857	21.2.23	KB증권
배우자	삼성제약	300	매각	2,694	21.2.23	KB증권
배우자	엠투아이	100	매각	2,260	21.2.23	KB증권
배우자	포인트모바일	25	매각	1,275	21.2.23	KB증권
배우자	지놈앤컴퍼니	50	매각	2,890	21.2.23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200	매각	3,740	21.2.23	KB증권
배우자	강스텝 바이오텍	200	매각	1,440	21.2.23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제약	20	매각	3,260	21.2.23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1,000	매각	1,385	21.2.23	KB증권
배우자	한국과마	30	매각	1,418	21.2.23	KB증권
배우자	삼성 엔지니어링	100	매각	1,315	21.2.22	KB증권
배우자	신풍제약	10	매각	782	21.2.22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104	매각	4,272	21.2.22	KB증권
배우자	박셀바이오	20	매각	2,017	21.2.22	KB증권
배우자	포인트모바일	30	매각	1,572	21.2.22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100	매각	1,915	21.2.22	KB증권
배우자	강스텝 바이오텍	500	매각	3,595	21.2.22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제약	20	매각	3,308	21.2.22	KB증권
배우자	바이텍스	150	매각	4,920	21.2.22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1,000	매각	1,430	21.2.22	KB증권
배우자	한국과마	60	매각	2,935	21.2.22	KB증권
배우자	SK케미칼	14	매각	5,352	21.2.19	KB증권
배우자	솔루엠	50	매각	1,347	21.2.19	KB증권
배우자	필룩스	200	매각	944	21.2.19	KB증권
배우자	삼성 엔지니어링	50	매각	652	21.2.19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45	매각	1,575	21.2.19	KB증권
배우자	삼성제약	200	매각	1,660	21.2.19	KB증권
배우자	박셀바이오	10	매각	1,070	21.2.19	KB증권
배우자	지놈엔컴퍼니	20	매각	1,110	21.2.19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400	매각	7,750	21.2.19	KB증권
배우자	러셀	3,200	매각	18,620	21.2.19	KB증권
배우자	에이티세미콘	5,000	매각	3,500	21.2.19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제약	28	매각	4,550	21.2.19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1,100	매각	1,573	21.2.19	KB증권
배우자	한국과마	30	매각	1,536	21.2.19	KB증권
배우자	SK바이오팜	10	매각	1,495	21.2.16	KB증권
배우자	일진다이아	100	매각	5,180	21.2.16	KB증권
배우자	유나이티드제약	15	매각	820	21.2.16	KB증권
배우자	신풍제약	5	매각	386	21.2.16	KB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	매각	125	21.2.16	KB증권
배우자	센코	100	매각	2,345	21.2.16	KB증권
배우자	바이브컴퍼니	100	매각	3,182	21.2.16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60	매각	1,191	21.2.16	KB증권
배우자	팬젠	100	매각	1,265	21.2.16	KB증권
배우자	세운메디칼	350	매각	2,264	21.2.16	KB증권
배우자	지놈엔컴퍼니	50	매각	2,808	21.2.15	KB증권
배우자	지엘팜텍	1,500	매각	2,460	21.2.15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1	매각	35	21.2.15	KB증권
배우자	라파스	130	매각	3,633	21.2.10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99	매각	3,227	21.2.10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1,000	매각	1,445	21.2.10	KB증권
배우자	삼천당제약	30	매각	1,761	21.2.10	KB증권
배우자	필룩스	200	매각	1,066	21.2.9	KB증권
배우자	코오롱글로벌	70	매각	1,428	21.2.9	KB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4	매각	1,778	21.2.9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110	매각	3,454	21.2.9	KB증권
배우자	필룩스	100	매각	520	21.2.8	KB증권
배우자	SK케미칼	15	매각	6,765	21.2.5	KB증권
배우자	에스씨엠 생명과학	30	매각	1,263	21.2.5	KB증권
배우자	지엘팜텍	1,000	매각	1,510	21.2.5	KB증권
배우자	박셀바이오	14	매각	1,937	21.2.4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200	매각	6,000	21.2.4	KB증권
배우자	한국과마	30	매각	2,037	21.2.4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1,000	매각	1,480	21.2.3	KB증권
배우자	피텔릭스	500	매각	720	21.2.3	KB증권
배우자	삼천당제약	20	매각	1,272	21.2.3	KB증권
배우자	녹십자홀딩스	15	매각	705	21.2.2	KB증권
배우자	보령제약	150	매각	3,285	21.2.2	KB증권
배우자	SK바이오팜	10	매각	1,480	21.2.1	KB증권
배우자	금호에이치티	200	매각	631	21.2.1	KB증권
배우자	씨아이에스	80	매각	1,328	21.2.1	KB증권
배우자	아이에이	500	매각	905	21.2.1	KB증권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30	매각	2,373	21.2.1	KB증권
배우자	삼천당제약	20	매각	1,224	21.2.1	KB증권
배우자	필룩스	100	매각	490	21.1.29	KB증권
배우자	디피씨	140	매각	1,659	21.1.29	KB증권
배우자	아남전자	400	매각	1,370	21.1.29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우	40	매각	3,092	21.1.29	KB증권
배우자	자비스	1,000	매각	2,740	21.1.29	KB증권
배우자	리셀	150	매각	778	21.1.29	KB증권
배우자	아이에이	1,400	매각	2,520	21.1.29	KB증권
배우자	SK케미칼	9	매각	3,991	21.1.28	KB증권
배우자	BGF	300	매각	2,034	21.1.28	KB증권
배우자	압타머 사이언스	50	매각	1,475	21.1.28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150	매각	3,497	21.1.28	KB증권
배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100	매각	1,485	21.1.28	KB증권
배우자	리셀	100	매각	530	21.1.28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제약	10	매각	1,936	21.1.28	KB증권
배우자	아이에이	2,000	매각	3,085	21.1.28	KB증권

배우자	SFA반도체	200	매각	1,576	21.1.28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70	매각	6,216	21.1.27	KB증권
배우자	녹십자홀딩스	15	매각	722	21.1.27	KB증권
배우자	셀코	50	매각	1,345	21.1.27	KB증권
배우자	압타머 사이언스	50	매각	1,572	21.1.27	KB증권
배우자	한국과마	12	매각	800	21.1.27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우	30	매각	2,343	21.1.26	KB증권
배우자	녹십자홀딩스	30	매각	1,398	21.1.26	KB증권
배우자	대한전선	500	매각	710	21.1.26	KB증권
배우자	삼성제약	500	매각	4,895	21.1.26	KB증권
배우자	엠투아이	100	매각	1,875	21.1.26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2,900	매각	7,312	21.1.22	KB증권
배우자	신탭홀딩스	500	매각	1,385	21.1.22	KB증권
배우자	네팩스아크	80	매각	4,240	21.1.21	KB증권
배우자	제일전기공업	180	매각	5,148	21.1.21	KB증권
배우자	골드퍼시픽	2,500	매각	5,225	21.1.21	KB증권
배우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500	매각	4,555	21.1.20	KB증권
배우자	한국과마	100	매각	4,700	21.1.19	KB증권
배우자	경농	200	매각	2,690	21.1.18	KB증권
배우자	박셀바이오	10	매각	1,910	21.1.18	KB증권
배우자	엠피코	100	매각	2,965	21.1.18	KB증권
배우자	에이디칩스	3,000	매각	3,900	21.1.18	KB증권
배우자	녹십자홀딩스	40	매각	1,754	21.1.15	KB증권
배우자	대웅제약	20	매각	3,480	21.1.14	KB증권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200	매각	37,200	21.1.14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20	매각	576	21.1.14	KB증권
배우자	후성	250	매각	2,925	21.1.13	KB증권
배우자	삼화콘텐서	20	매각	1,438	21.1.12	KB증권
배우자	에이프로	60	매각	2,550	21.1.11	KB증권
배우자	현대약품	100	매각	1,000	21.1.8	KB증권
배우자	삼성제약	200	매각	1,656	21.1.7	KB증권
배우자	피플바이오	50	매각	3,580	21.1.7	KB증권
배우자	후성	50	매각	625	21.1.6	KB증권
배우자	명신산업	90	매각	4,275	21.1.6	KB증권
배우자	에스씨엠 생명과학	30	매각	1,539	21.1.6	KB증권

배우자	압타머 사이언스	50	매각	1,500	21.1.6	KB증권
배우자	캠트로스	100	매각	760	21.1.6	KB증권
배우자	피엔이솔루션	60	매각	1,350	21.1.6	KB증권
배우자	제일전기공업	100	매각	2,635	21.1.5	KB증권
배우자	KG ETS	500	매각	3,200	21.1.4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800	매각	17,440	21.1.4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92	매각	17,675	20.12.30	KB증권
배우자	현대바이오	500	매각	11,500	20.12.30	KB증권
배우자	클리노믹스	900	매각	13,380	20.12.29	KB증권
배우자	대화제약	100	매각	2,000	20.12.28	KB증권
배우자	동구바이오제약	100	매각	2,720	20.12.28	KB증권
배우자	롯데관광개발	400	매각	6,040	20.12.24	KB증권
배우자	클리노믹스	72	매각	1,303	20.12.24	KB증권
배우자	에이비엘 바이오	100	매각	2,940	20.12.24	KB증권
배우자	아이진	100	매각	1,280	20.12.24	KB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37	매각	242	20.12.24	KB증권
배우자	부광약품	50	매각	1,655	20.12.22	KB증권
배우자	피플바이오	75	매각	4,350	20.12.22	KB증권
배우자	코스모화학	200	매각	2,630	20.12.21	KB증권
배우자	나라엠앤디	253	매각	2,947	20.12.21	KB증권
배우자	삼보관지	590	매각	7,136	20.12.21	KB증권
배우자	두산 인프라코어	702	매각	5,791	20.12.18	KB증권
배우자	부광약품	37	매각	1,124	20.12.18	KB증권
배우자	캠트로스	100	매각	738	20.12.18	KB증권
배우자	아이진	100	매각	1,355	20.12.18	KB증권
배우자	삼보관지	238	매각	2,618	20.12.18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100	매각	2,080	20.12.17	KB증권
배우자	에이비 프로바이오	1,110	매각	2,275	20.12.17	KB증권
배우자	유나이티드제약	136	매각	7,316	20.12.16	KB증권
배우자	파미셀	300	매각	6,300	20.12.16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100	매각	2,070	20.12.16	KB증권
배우자	PI 첨단소재	100	매각	3,770	20.12.16	KB증권
배우자	씨티씨바이오	12	매각	97	20.12.16	KB증권
배우자	파미셀	294	매각	6,071	20.12.15	KB증권

배우자	녹십자홀딩스	145	매각	5,314	20.12.15	KB증권
배우자	파미셀	600	매각	12,420	20.12.14	KB증권
배우자	녹십자홀딩스	150	매각	5,355	20.12.14	KB증권
배우자	소룩스	300	매각	6,195	20.12.14	KB증권
배우자	씨티씨바이오	822	매각	6,493	20.12.11	KB증권
배우자	하나기술	90	매각	6,552	20.12.10	KB증권
배우자	엔디포스	802	매각	5,477	20.12.9	KB증권
배우자	드림텍	465	매각	6,556	20.12.4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19	매각	6,232	20.11.30	KB증권
배우자	진원생명과학	360	매각	9,144	20.11.20	KB증권
배우자	에이비프로바이오	3,000	매각	5,805	20.11.19	KB증권
배우자	카카오게임즈	184	매각	8,878	20.11.19	KB증권

##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4. 5.(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1-44	전북산업 생태계 변화 홍보 철저	<p>○ 최근 탄소산업진흥원 출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및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전북의 산업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간 낙후·고착화된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변화된 전북의 산업지도도를 정립하고 도민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특집보도, 알쭉전북 등)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관련 실·국)</p>
2021-45	해상풍력지원항만 구축 대응 철저	<p>○ 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지원항만(중량물 부두)이 제외되어 서남권 해상풍력산업 배후항만 역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산업여건 변화에 맞춰 군산항 항만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하여 군산항 7부두 야적장과 해상풍력지원항만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해양항만과 / 협조 : 관련 실·국)</p>
2021-46	니트족·니스족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p>○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니트족·니스족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고립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 협조 : )</p>
2021-47	도내 외국인 포용 정책 강화	<p>○ 도내 거주 외국인(49,555명/19년 기준)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포용정책을 강화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국제협력과 / 협조 : 관련 실·국)</p>
2021-48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p>○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모바일 앱, 문자메시지, 챗봇 등 행정정보 안내에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는 추세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민원·일자리·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지방세 등 각 분야별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챗봇 기능을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보화총괄과 / 협조 : 관련 실·국)</p>
	당면·현안업무	<p>○ 2/4분기 도정 운영 내실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대응)</b>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기본방역수칙 준수, 신속한 진단검사, 예방접종의 3가지가 핵심이므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하고, 최근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시설·단체에 타지역 이동 최소화 등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하기 바람.</li> <li>- <b>(주요현안)</b> 공공의대법 등 현안법안 임시국회 대응, 1회 추경편성, 조직개편,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국정감사 등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사회재난과, 보건의료과, 예방접종시행추진단 / 전 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1-49호

###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0-164호(2020.12.11.)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4월 9일

1. 목 적 :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2. 우선공급 대상(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 군산시 전역
4. 적용기간 : 고시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3711~3)

군산시 공고 제2021-757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87 외1)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나운동 15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87 외1)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4월 9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건설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56-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사업
    - 2) 명 칭 : 서해초교 사거리 개선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도로(중로 2-187호선) : B=17m, L=30m
    - 2) 주차장 122호 : A=1,273.5㎡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건설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6.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 및 건설과(☎063-454-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 2-187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56-1	잡	1,799.9	5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1,799.9	526.4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주차장 122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56-1	잡	1,799.9	1,27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1,799.9	1,273.5						

익산시 고시 제2021-52호

### 익산 도시관리계획(부송3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부송3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9일  
익 산 시 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익산 부송(3)지구 택지개발 사업구역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어양동 일원	246,739.8	-	246,739.8	전북고시 제2000-111호 (2000.04.07.)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변경
  -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6,739.8	-	246,739.8	100.0	
일반주거지역	165,562		165,562	67.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증) 16,060	16,060	6.5	중세분 면적 반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증) 149,502	149,502	60.6	중세분 면적 반영
일반상업지역	60,945	-	60,945	24.7	
자연녹지지역	20,232.8	-	20,232.8	8.2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06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세분된 용도지역 면적 반영
-	-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9,50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세분된 용도지역 면적 반영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변경

○ 결정(변경) 조서: 유치원1 기반시설에서 제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삭제	1	유치원	유치원	부송동 1114-6대 일원	860.2	-	-	-	

2) 기타시설: 변경

○ 결정(변경) 조서: 종교시설1 기반시설에서 제외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삭제	1	종교시설	부송동 1081-2종 일원	3,736.9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신설

구분	계획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개발은 토지이용계획상 동일한 용지·가구 및 최대대지규모 범위안에서 허용함</li> <li>공동개발로 인한 합병은 2개 필지 이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분할은 합병된 용지에 대하여 합병이전의 규모 및 형태로 분할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함</li> <li>공동주택용지는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금지함</li> <li>상업용지는 인접 2개 필지, 1회에 한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최대대지규모를 적용하지 아니함</li> </ul>

< 최대 대지규모 기준 >

위치	최대대지규모(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단독주택건설용지	-	660	
근린생활시설용지	-	825	
상업용지	-	825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건축선·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구분	계획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3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46조 내지 제54조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계획함</li> <li>허용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되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li> <li>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되거나, 허용되더라도 지역특성관리 등을 위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함</li> <li>입지하고자 하는 용도가 불허용도와 허용용도 모두에 해당할 경우 불허용도는 허용용도에 우선함</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 동시에 적용함</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 등 개정 시 개정된 사항을 따르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을 따름</li> <li>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따름</li> </ul>

< 허용·불허용도 >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단독주택건설용지	기정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li> <li>-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 적용</li> <li>- 단독주택 1BL(10필지)은 순수단독으로 지정(근린생활시설 불허)</li> </ul> 불허용도 -	주거비율 60% 이상, 단독주택1BL(10필지)은 주거비율 100%	
		변경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1제1호 단독주택</li> <li>- 가. 단독주택</li> <li>- 나. 다가구주택</li> <li>• 별표1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별표1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제외)</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건설용지	기정	지정용도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		
		변경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li> <li>• 주택법 제2조 중</li> <li>- 제6호의 부대시설</li> <li>- 제7호의 복리시설</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익산시 건축조례(익산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허용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법 제6조 제1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교육청 심의 통과시에는 허용)</li> <li>•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건축물: 익산시건축조례(익산시도시계획조례) 적용</li> </ul>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변경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1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별표1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제외)</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	기정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6(별항1) 및 익산시건축조례(익산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법 제6조 제1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교육청 심의 통과시에는 허용)</li> <li>• 중심지 미관지구 내 불허건축물: 익산시건축조례(익산시도시계획조례) 적용</li> </ul>	
	변경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8호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8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가능한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	기정	지정용도	• 당해용도 및 부속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변경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해 도시계획시설 용도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	기정	지정용도	-	
		불허용도	-	
	변경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음.</li> <li>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li> <li>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li> <li>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li> <li>라) 독서실</li> </ul> </li> <li>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li> <li>3)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li> <li>4) 생활편익시설(문구점, 서점, 운동기구점 및 사진관에 한함)</li> <li>5) 의료시설</li> <li>6) 주민운동시설</li> <li>7) 종교시설</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	기정	지정용도	-	
		불허용도	-	
	변경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1 제6호 종교시설</li> <li>- 가. 종교집회장</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함

구 분		용 적 률 (%)		건 폐 율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단독주택건설용지		40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40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	1 B L	230 이하	2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2 B L	230 이하	2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3 B L	230 이하	2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상 업 용 지		1,000이하	80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초 등 학 교		40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유 치 원		40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종 교 용 지		40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주차장 계획: 신설

- 대지내 부설주차장

적용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부설주차장	건축물 건축 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당해 대지내 설치하여야 함	의무

※ 주차장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기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부설주차장은 적용하지 아니함

## 2)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

- 기존 건축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은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일 이전부터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함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건축제한 규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의 용도 변경 허용</li> <li>•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대수선, 재축 허용</li> <li>•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관련법률 및 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증축, 개축, 리모델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함</li> <li>-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의 용적률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함</li> </ul> </li> </ul>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금회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작성함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실음생략

익산시 고시 제2021-53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목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목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9일

익 산 시 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익산2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목천취락지구)	익산시 목천동 360-7 일원	467,998	-	467,998	익산63 ('02.08.14)	

※ 익산시 구역: 455,235㎡ / 김제시 구역: 12,763㎡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변경

##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기정	24	6,202	120,121	5	2,828	84,805	5	1,079	20,927	14	2,295	14,389
	변경	감)1	감)415	감)12,893	-	-	-	감)1	감)416	감)12,896	-	증)1	증)3
	변경후	23	5,787 (5,776)	107,228 (106,369)	5	2,828 (2,817)	84,805 (83,946)	4	663	8,031	14	2,296	14,392

구분	유형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대로	기정	3	2,633	92,062	2	2,217	79,166	1	416	12,896	-	-	-
	변경	감)1	감)416	감)12,896	-	-	-	감)1	감)416	감)12,896	-	-	-
	변경후	2	2,217 (2,206)	79,166 (78,307)	2	2,217 (2,206)	79,166 (78,307)	-	-	-	-	-	-
중로	기정	3	322	4,888	-	-	-	2	224	3,699	1	98	1,189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3	322	4,888	-	-	-	2	224	3,699	1	98	1,189
소로	기정	18	3,247	23,171	3	611	5,639	2	439	4,332	13	2,197	13,200
	변경	-	증)1	증)3	-	-	-	-	-	-	-	증)1	증)3
	변경후	18	3,248	23,174	3	611	5,639	2	439	4,332	13	2,198	13,203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폐지	대로	2	3	31	주간선 도로	416	평화동 312-49구 대로1-3	목천동 1180도 중로2-501	일반 도로		국토부 2017-522 ('17.08.02)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844	대로1-1	중로3-2	일반 도로		익산63 ('02.08.14)	
변경	소로	3	12	6	국지 도로	845	대로1-1	중로3-2	일반 도로		익산63 ('02.08.1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2-3	-	• 노선 통폐합에 따른 노선폐지	• 평화 육교개선사업과 연계함에 따른 목천동 일원 도로 위계 조정 • 대로2-3호선 시설 폐지 후 목천동 대로1류1호선에 편입
소로3-12	소로3-12	• 연장 변경 - L = 844m → 845m(증 1m)	• 대로1-1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연장 증가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주거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합 계				203,625	190,435			203,625	190,435	
1	1	1	1	1,485	648	-	목천동 262-2대 일원	1,485	648	면적정정
2	2	2	2	5,048	5,109	-	목천동 269-1대 일원	5,048	5,109	면적정정
3	3	3	3	9,714	9,782	-	목천동 333대 일원	9,714	9,782	면적정정
4	4	4	4	6,725	6,651	-	목천동 281대 일원	6,725	6,651	면적정정
5	5	5	5	2,910	2,849	-	목천동 332-3답 일원	2,910	2,849	면적정정
6	6	6	6	7,721	7,698	-	목천동 342대 일원	7,721	7,698	면적정정
7	7	7	7	5,221	5,206	-	목천동 294대 일원	5,221	5,206	면적정정
8	8	8	8	74,503	74,415	-	목천동 363-7대 일원	74,503	74,415	면적정정
9	9	9	9	26,198	26,180	-	목천동 396-1대 일원	26,198	26,180	면적정정
10	10	10	10	5,276	5,276	-	목천동 1183-9잡 일원	5,276	5,276	
11	11	11	11	5,667	5,660	-	목천동 1431-17잡 일원	5,667	5,660	면적정정
12	12	12	12	2,855	2,855	-	목천동 436-3대 일원	2,855	2,855	
14	14	14	14	2,970	2,970	-	목천동 441-2주 일원	2,970	2,970	
15	15	15	15	20,845	8,865	-	목천동 440-5대 일원	20,845	8,865	면적정정
17	17	17	17	13,544	13,316	-	목천동 430-27전 일원	13,544	13,316	면적정정
18	18	18	18	12,943	12,955	-	목천동 791대 일원	12,943	12,955	면적정정

#### 2) 공업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합 계				49,865	49,501			49,865	49,501	
1	1	1	1	9,239	9,239	-	목천동 360-7대 일원	9,239	9,239	
2	2	2	2	28,202	27,880	-	목천동 311-4대 일원	28,202	27,880	면적정정
3	3	3	3	12,424	12,382	-	목천동 415-14대 일원	12,424	12,382	면적정정

3) 녹지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합 계				80,300	80,476			80,300	80,476	
1	1	1	1	8,993	8,935	-	목천동 291답 일원	8,993	8,935	면적정정
2	2	2	2	2,139	2,139	-	목천동 295답 일원	2,139	2,139	
3	3	3	3	1,560	1,446	-	목천동 1178-76구 일원	1,560	1,446	면적정정
4	4	4	4	45,343	45,782	-	목천동 1178-78구 일원	45,343	45,782	면적정정
5	5	5	5	1,135	1,115	-	목천동 1209도 일원	1,135	1,115	면적정정
7	7	7	7	4,805	4,805	-	목천동 1183-50잡 일원	4,805	4,805	
8	8	8	8	8,790	8,761	-	목천동 1183-49잡 일원	8,790	8,761	면적정정
9	9	9	9	7,535	7,493	-	목천동 444-10전 일원	7,535	7,493	면적정정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건축선·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구분	계획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3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46조 내지 제54조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계획함</li> <li>허용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되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li> <li>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되거나, 허용되더라도 지역특성관리 등을 위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함</li> <li>입지하고자 하는 용도가 불허용도와 허용용도 모두에 해당할 경우 불허용도는 허용용도에 우선함</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 동시에 적용함</li>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 등 개정 시 개정된 사항을 따르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을 따름</li> <li>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따름</li> </ul>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 기존 건축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은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일 이전부터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함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건축제한 규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의 용도 변경 허용</li> <li>•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대수선, 재축 허용</li> <li>•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관련법률 및 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증축, 개축, 리모델링 허용</li> <li>-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며,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함</li> </ul>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금회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작성함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실음생략

익산시 고시 제2021-55호

## 익산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4월 9일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배산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지정내용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배산 지구	모현동, 송학동 일원	택지개발 사업지구	762,514.8	-	762,514.8	전북349 (05.12.26)	-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4,152.0	증)4,608.9	18,760.9		
기정	1	노외주차장	모현동1가 832차	873.7	-	873.7	전북고시 2005-349 ('05.12.26)	
기정	2	노외주차장	모현동1가 836차	748.1	-	748.1	전북고시 2005-349 ('05.12.26)	
기정	3	노외주차장	모현동1가 846차	1,566.4	-	1,566.4	전북고시 2005-349 ('05.12.26)	
기정	4	노외주차장	모현동1가 858차	1,764.7	-	1,764.7	전북고시 2005-349 ('05.12.26)	
기정	5	노외주차장	모현동1가 868차	383.0	-	383.0	전북고시 2005-349 ('05.12.26)	
신설	6	노외주차장	모현동2가 676종	-	증)1,672.5	1,672.5	-	금회 신설
신설	7	노외주차장	모현동1가 885종	-	증)863.5	863.5	-	금회 신설
신설	8	노외주차장	모현동2가 688종	-	증)2,072.9	2,072.9	-	금회 신설
기정	-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내	8,816.1	-	8,816.1	전북고시 2005-349 ('05.12.26)	

나)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6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2가 676종 종교시설용지1</li> <li>⇒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li> <li>- 기정 0㎡ ⇒ 1,672.5㎡(증1,672.5㎡)</li> </ul>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종교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7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1가 885종 종교시설용지2</li> <li>⇒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li> <li>- 기정 0㎡ ⇒ 863.5㎡(증863.5㎡)</li> </ul>	
8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2가 688종 종교시설용지3</li> <li>⇒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li> <li>- 기정 0㎡ ⇒ 2,072.9㎡(증2,072.9㎡)</li> </ul>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주1	주1	주1	주1	873.7	-	873.7	모현동1가 832차	873.7	-	873.7	
주2	주2	주2	주2	748.1	-	748.1	모현동1가 836차	748.1	-	748.1	
주3	주3	주3	주3	1,566.4	-	1,566.4	모현동1가 846차	1,566.4	-	1,566.4	
주4	주4	주4	주4	1,764.7	-	1,764.7	모현동1가 858차	1,764.7	-	1,764.7	
주5	주5	주5	주5	383.0	-	383.0	모현동1가 868차	383.0	-	383.0	
-	주6	-	주6	-	증)1,672.5	1,672.5	모현동2가 676종	-	증)1,672.5	1,672.5	
-	주7	-	주7	-	증)863.5	863.5	모현동1가 885종	-	증)863.5	863.5	
-	주8	-	주8	-	증)2,072.9	2,072.9	모현동2가 688종	-	증)2,072.9	2,072.9	
8개소				5,335.9	증)4,608.9	9,944.8		5,335.9	증)4,608.9	9,944.8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6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2가 676종 종교시설용지1</li> <li>⇒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li> <li>- 기정 0㎡ ⇒ 1,672.5㎡(증1,672.5㎡)</li> </ul>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종교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7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1가 885종 종교시설용지2</li> <li>⇒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li> <li>- 기정 0㎡ ⇒ 863.5㎡(증863.5㎡)</li> </ul>	
8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2가 688종 종교시설용지3</li> <li>⇒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li> <li>- 기정 0㎡ ⇒ 2,072.9㎡(증2,072.9㎡)</li> </ul>	

나)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적(m <sup>2</sup>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종1	-	종1	-	1,672.5	감)1,672.5	-	모현동2가 581종	1,672.5	감)1,672.5	-	
종2	-	종2	-	863.5	감)863.5	-	모현동1가 875-1종	863.5	감)863.5	-	
종3	-	종3	-	2,072.9	감)2,072.9	-	모현동2가 637종	2,072.9	감)2,072.9	-	
		3개소		4,608.9	감)4,608.9	-	-	4,608.9	감)4,608.9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종교 시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2가 676종 종교시설용지1 ⇒ 주차장용지6 용도변경 - 기정 1,672.5m<sup>2</sup> ⇒ 0m<sup>2</sup>(감1,672.5m<sup>2</sup>)</li> </ul>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종교시설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종교 시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1가 885종 종교시설용지2 ⇒ 주차장용지7 용도변경 - 기정 863.5m<sup>2</sup> ⇒ 0m<sup>2</sup>(감863.5m<sup>2</sup>)</li> </ul>	
3	종교 시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현동2가 688종 종교시설용지3 ⇒ 주차장용지8 용도변경 - 기정 2,072.9m<sup>2</sup> ⇒ 0m<sup>2</sup>(감2,072.9m<sup>2</sup>)</li> </ul>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높이·배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통	공통	공통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며, 폭20m 이상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투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주1, 주2, 주3, 주4), 60%이하(주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이하(주1, 주2, 주3, 주4), 60%이하(주5, 주6, 주7, 주8)</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0%이하(주1, 주2), 600%이하(주3, 주4), 230%이하(주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0%이하(주1, 주2), 600%이하(주3, 주4), 230%이하(주5), 200%이하(주7), 150%이하(주6, 주8)</li> </ul>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층이하(주1, 주2), 8층이하(주3, 주4), 5층이하(주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층이하(주1, 주2), 8층이하(주3, 주4), 5층이하(주5, 주7), 4층이하(주6, 주8)</li> </ul>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유1	유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이하</li> </ul>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층 이하</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li> <li>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로2-11호선 변 유치원용지</li> </ul> </li> <li>1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공원 1호 변 유치원 용지</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li> </ul> </li> </ul>				
초1,중1	초1,중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li> <li>중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 이하</li> </ul>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li> <li>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근린공원1, 근린공원6호 변</li> <li>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3-13, 소로1-18, 3-6, 3-7호선, 중2-10호선변</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li> </ul> </li> </ul>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 면 번 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통				전면 대지 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공지는 &lt;별표7&gt;의 내용을 따른다.</li> <li>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한다.</li> </ul> </li> </ul>
				공공 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조경은 &lt;별표7&gt;의 내용을 따른다.</li> </ul>
				차량 출 입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li> <li>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li> </ul>
유1, 초1,중 1, 중1~ 중2, 주1~ 주5, 공공 청사1 공공 청사3 공공 청사4 위1, 사1	유1, 초1,중 1, - 주1~ 주8, 공공 청사1 공공 청사3 공공 청사4 위1, 사1	유1, 초1,중 1, 중1~ 중2, 주1~ 주5, 공공 청사1 공공 청사3 공공 청사4 위1, 사1	유1, 초1,중 1, - 주1~ 주8, 공공 청사1 공공 청사3 공공 청사4 위1, 사1	차량 출 입 및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li> <li>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li> </ul>
				대지 내 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li> <li>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li> <li>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li> </ul>
				보행 자 동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ul>
				생태 도 시 조 성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용지중 초1, 중1BL내의 교사동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 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학교용지중 초1, 중1BL내에는 교사동의 옥상에 정원설치를 권장한다.</li> <li>학교용지중 초1, 중1BL내에는 교사동은 벽면녹화를 권장한다.</li> <li>학교용지중 초1, 중1BL내에는 정원의 일부에 텃밭설치를 권장한다.</li> <li>학교용지중 초1, 중1BL내의 학교건물에는 각 지붕에 빗물받이 홈통 설치후 물탱크 우수저장실 등의 우수재활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학교용지중 초1, 중1BL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li> </ul>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금회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작성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실음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1-1018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4월 9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사업  
나. 명 칭 : 익산경찰서 수사부서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 2.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면적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경찰서)사업	익산경찰서 수사부서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익산시 모현동2가 289번지	18,438.3㎡ (건축면적: 51.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국)경찰청 익산경찰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165-12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03.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정읍시 고시 제2021 - 30호

## 정읍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1-95호(2021. 4. 2.)로 고시된 정읍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1년 4월 9일

###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광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가. 공간시설

#####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교통 광장	교차점광장	정읍 인터체인지	100,085	감)7,587	92,498	전북고시 제2003-160호 (03.07.04)	-

#####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교통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장 축소변경</li> <li>면적 : 100,085m<sup>2</sup> → 92,498m<sup>2</sup> 감)7,587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남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월동자재보관창고 이전 및 노후화된 정읍경찰서 신축이전에 따른 교통광장 축소변경</li> </ul>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공공 청사	정읍 경찰서	정읍시 농소동 228-80번지 일원	-	증)15,984	15,984	-	-

#####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공공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청사 신설</li> <li>위치 : 농소동 228-80번지 일원</li> <li>면적 : 15,984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읍경찰서 건축물의 노후화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읍경찰서를 신축·이전하고자 함</li> </ul>

### 2.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광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실읍생략”

정읍시 고시 제2021 - 31호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고시 및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1-94호(2021. 4. 2.)로 고시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1년 4월 9일

###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고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고등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수성동 443	81,383	감) 14,300	67,083	'801231	

####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고등학교	·면적변경 - 기정 81,383㎡ → 변경 67,083㎡, 감) 14,300㎡	· 정읍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읍교육지원청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12)의 변경

나.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도 : “실음생략”

2.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고등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수성동 443	81,383	감) 14,300	67,083	801231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고등학교	·면적변경 - 기정 81,383㎡ → 변경 67,083㎡, 감) 14,300㎡	· 정읍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읍교육지원청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12)의 변경

나.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공공청사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 수성동 450-2번지 일원	-	증)12,738.0	12,738.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공공청사	·공공청사(신설) - 면적 : 12,738.0㎡	· 정읍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읍교육지원청 설치하여 원활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다.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1-48호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20-170(2020.10.16.)호로 인가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남원예춘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9.  
남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 : 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명칭】 남원예춘마당 조성사업(짚와이어 도착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 721m<sup>2</sup>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남원시장(관광과)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5. 취소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절차 미이행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붙임]

토지조서 및 토지의 소유자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030	721	-	-	-	-	-	-
1	쌍교동	342	도	545	65	국(건설부)	-				
2	쌍교동	276	대	255	255	남원시	-				
3	쌍교동	296	도	89	7	박*호	남원읍 죽*리 1*4				
4	쌍교동	297	대	122	122	오*정	군포시 산*동1**0 주몽아파트 100*-10**				
5	쌍교동	298	도	36	36	김*숙	남원읍 천거리 **				
6	쌍교동	301	도	50	50	박*서	천거리				
7	쌍교동	334	도	3	3	김**달	남원읍 천거리 1**				
8	쌍교동	335	도	36	36	남원시	-				
9	쌍교동	337	대	116	116	이*우	남원읍 천거리 **7				
10	쌍교동	338	대	7	7	윤*호	남원읍 천거리 3*				
11	쌍교동	339	도	771	24	남원시	-				

<지장물 조서>

연번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 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단위	성명또는명칭	주소	
1	쌍교동	276	대	주택	목조/기와	39.3	㎡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주택	목조/기와	27.1	㎡			
				주택	목조/세와	11.6	㎡			
2	쌍교동	297	대	주택	목조	40.05	㎡	오*정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0  주몽아파트 10**-10**	
				주택 및 점포	세멘트블럭조	29.13	㎡			
				주택	세멘트블럭조 /스레트	11	㎡			
3	쌍교동	337	대	다방	철근콘크리트	85.87	㎡	이*우	남원시 쌍교동 3**	
				점포	철근콘크리트	64.67	㎡			
				주택	철근콘크리트	64.67	㎡			
				화장실	시멘트블럭조 /스라브	1	㎡			

김제시 고시 제2021-40호

##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구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구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063-540-391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4월 9일

###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구산 공원	근린 공원	옥산동 일원	28,078	-	28,078	전라북도고시 제324호 (77.12.30)	-

#### 나. 구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조서

시설명	부 지 면 적 (㎡)			구성비 (%)	건 축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594	감)516	28,078	100.0	56	감)2	54	56	감)2	54		
공 원 시 설	소 계	9,166	증)8	9,174	32.7	56	감)2	54	56	감)2	54	시설률: 32.7%
	도로 및 광장	3,535	증)3	3,538	12.6	24	-	24	24	-	24	
	조경 시설	2,450	증)35	2,485	8.9	-	-	-	-	-	-	
	휴양 시설	949	-	949	3.4	-	-	-	-	-	-	
	유희 시설	233	-	233	0.8	-	-	-	-	-	-	
	운동 시설	676	-	676	2.4	-	-	-	-	-	-	
	편익 시설	1,323	감)30	1,293	4.6	32	감)2	30	32	감)2	30	
	관리 시설	-	-	-	-	-	-	-	-	-	-	
녹 지	19,428	감)524	18,904	67.3	-	-	-	-	-	-	녹지율: 67.3%	

2) 조성계획결정(변경) 세부조서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594	감)516	28,078	56	감)2	54	56	감)2	54	
계					9,166	증)8	9,174	56	감)2	54	56	감)2	54	
	소 계				3,535	증)3	3,538	24	-	24	24	-	24	
도로 및 광장	-	-	도로	도로	1,912	증)3	1,915	-	-	-	-	-	-	
	1-1	1-1	광장	광장	751	-	751	-	-	-	-	-	-	
	1-2	1-2	정자목광장	정자목광장	663	-	663	-	-	-	-	-	-	
	1-3	1-3	휴게광장	휴게광장	209	-	209	24	-	24	24	-	24	
	소 계				2,450	증)35	2,485	-	-	-	-	-	-	
조경 시설	2-1	2-1	화단	화단	2,117	-	2,117	-	-	-	-	-	-	
	2-2	2-2	화단	화단	333	-	333	-	-	-	-	-	-	
		2-3		디딤석		증)35	35							
공 원 사 설	소 계				949	-	949	-	-	-	-	-	-	
	3-1	3-1	휴게쉼터	휴게쉼터	131	-	131	-	-	-	-	-	-	
	3-2	3-2	휴게쉼터	휴게쉼터	362	-	362	-	-	-	-	-	-	
	3-3	3-3	피크닉장	피크닉장	456	-	456	-	-	-	-	-	-	
유 회 사 설	소 계				233	-	233	-	-	-	-	-	-	
	4-1	4-1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233	-	233	-	-	-	-	-	-	
운 동 사 설	소 계				676	-	676	-	-	-	-	-	-	
	5-1	5-1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70	-	70	-	-	-	-	-	-	
	5-2	5-2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241	-	241	-	-	-	-	-	-	
	5-3	5-3	족구장	족구장	365	-	365	-	-	-	-	-	-	
편 익 사 설	소 계				1,323	감)30	1,293	32	감)2	30	32	감)2	30	
	6-1	6-1	주차장	주차장	1,049	-	1,049	-	-	-	-	-	-	
	6-2	6-2	화장실	화장실	60	감)30	30	32	감)2	30	32	감)2	30	
	6-3	6-3	음수대	음수대	-	-	-	-	-	-	-	-	-	
	6-4	6-4	전망테크	전망테크	214	-	214	-	-	-	-	-	-	
관 리 사 설	소 계				-	-	-	-	-	-	-	-	-	
	-	-	안내관	안내관	-	-	-	-	-	-	-	-	-	
	-	-	조명시설	조명시설	-	-	-	-	-	-	-	-	-	
녹 지		녹 지	녹 지	19,428	감)524	18,904	-	-	-	-	-	-		

다. 가로망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955	1,915				
기정	소로	3	2	2.0	산책로	230	460	소로3-1	소로3-8	-	
기정	소로	3	3	2.0	산책로	225	450	소로3-2	옥산동 6-5	-	
기정	소로	3	4	2.0	산책로	256	512	소로3-2	옥산동 6-5	-	
기정	소로	3	5	2.0	산책로	26	52	소로3-82	소로3-3	-	
변경	소로	3	6	2.0	산책로	18	36	475	소로3-4	-	
기정	소로	3	7	2.0	산책로	36	72	소로3-4	소로3-2	-	
기정	소로	3	8	2.0	산책로	49	98	소로3-4	옥산동 6-5	-	
기정	소로	3	9	2.0	산책로	16	32	소로3-84	소로3-4	-	
변경	소로	3	9	2.0	산책로	18	39	소로3-84	소로3-4	-	
기정	소로	3	10	2.0	산책로	38	76	소로3-2	옥산동 6-2	-	
기정	소로	3	11	2.0	산책로	30	60	휴게쉼터	옥산동 6-5	-	
기정	소로	3	12	2.0	산책로	11	22	소로3-84	휴게쉼터	-	
변경	소로	3	12	2.0	산책로	8	18	소로3-84	휴게쉼터	-	
기정	소로	3	13	2.0	산책로	11	22	체력단련장	전망테크	-	
기정	소로	3	14	2.0	산책로	10	20	소로3-2	전망테크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9	소로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경</li> <li>- 연장 : 16→18m</li> <li>- 폭원 : 2.0→2.0m</li> <li>- 면적 : 32→3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경계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소로3 12	소로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경</li> <li>- 연장 : 11→8m</li> <li>- 폭원 : 2.0→2.0m</li> <li>- 면적 : 22→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경계 변경에 의한 여건반영</li> </ul>

2. 김 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김제시 고시 제2021-41호

## 김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시 서암동 우석병원 및 금구면 금구사거리 일원의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4. 9.

김 제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가. 김제 도시지역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2	8	국지도로	225	소로 3-210 서암동 387-8	대로 3-7 서암동 396-3	일반도로		건설 제44호 (86.1.30)	
변경	소로	2	62	6~22	국지도로	462	대로 1-6 서암동 62-12	대로 3-7 서암동 396-3	일반도로		건설 제44호 (86.1.30)	폭원증가 연장증가
기정	소로	3	210	6	국지도로	310	대로 3-7 서암동 397-12	소로 2-62 서암동 387-14	일반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변경	소로	3	210	6	국지도로	309	대로 3-7 서암동 397-12	소로 2-62 서암동 387-14	일반도로		전북 제516호 (75.9.30)	경미한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62	소로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 및 연장증가</li> <li>- 폭원(B) = 8m → 6m~22m</li> <li>- 연장(L) = 225m → 462m(중 237m)</li> </ul>	- 일몰제로 인해 부분 실효된 도로를 다시 연결하여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환경개선
변경	소로 3-210	소로 3-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부 조정(경미한 변경)</li> <li>- 폭원(B) = 6m</li> <li>- 연장(L) = 310m → 309m(감 1m)</li> </ul>	- 소로 2-62호선 연장증가에 따른 중점부 조정

나. 금구 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	16	집산 도로	35	소로 1-1 금구리 318	소로 1-8 금구리 358-2	일반 도로		금회	주택건설사업
신설	소로	1	8	10	집산 도로	386	중로 2-1 금구리 301	중로 2-4 금구리 318	일반 도로		금회	주택건설사업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중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신설</li> <li>- 폭원(B) = 16m</li> <li>- 연장(L) = 35m</li> </ul>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신설	-	소로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신설</li> <li>- 폭원(B) = 10m</li> <li>- 연장(L) = 386m</li> </ul>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우회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2.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실음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1-37호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1년 4월 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707-22번지 일원(B블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명 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농기계 보관 및 관리시설 신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721,748.4㎡
  - (대지면적 : A블럭: 352,374.9㎡, **B블럭: 159,774.1㎡**, C블럭: 28,321.2㎡)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기정	변경	계	기정	변경		
<b>합계</b>	<b>55,187.90</b>	<b>53,843.50</b>	<b>1,344.40</b>	<b>74,864.64</b>	<b>73,520.24</b>	<b>1,344.40</b>		
A블럭	소계	46,265.19	45,046.79	1,218.40	65,972.88	64,754.48	1,218.40	
	주1, 부1~36	45,046.79	45,046.79	-	64,754.48	64,754.48		
	부37	1,218.40	-	1,218.40	1,218.40	-	1,218.40	인가 (21.3.19)
B블럭	소계	8,785.19	8,659.19	126.00	8,755.76	8,629.76	126.00	
	주1, 부1~14	8,659.19	8,659.19	-	8,629.76	8,629.76	-	
	<b>부15</b>	<b>126.00</b>		<b>126.00</b>	<b>126.00</b>		<b>126.00</b>	금회
C블럭	소계	137.52	137.52	-	136.00	136.00	-	
	주1	137.52	137.52	-	136.00	136.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 도보이용안내

##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mailto: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